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9. 25 선고 2024가단112843 판결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황병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22. 4. 12. 피고와 부산 해운대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800만 원, 임대차존속기간 2022. 4. 27.부터 2024.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은 2022. 4. 26. 임대차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 피고는 2024. 4. 29.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4. 4. 29.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8,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24. 6. 27. 및 2024. 6. 28. 원고에게 8,690만 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다(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10만 원을 공제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김주영